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한국항공대학교
Korea Aerospace University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1. 05. 01.		18	2021. 02. 25.	
2	2011. 09. 01.		19	2021. 08. 23.	
3	2013. 08. 27.		20	2021. 09. 30.	
4	2014. 03. 04.		21	2022. 01. 26.	
5	2014. 07. 11.		22	2022. 03. 24.	
6	2015. 08. 01.		23	2022. 05. 03.	
7	2016. 03. 01.		24	2022. 10. 18.	
8	2016. 12. 01.		25	2022. 12. 16.	
9	2017. 09. 01.		26	2023. 05. 15.	
10	2018. 05. 28.		27	2023. 09. 25.	
11	2018. 09. 21.		28	2023. 11. 10.	
12	2018. 11. 28.		29	2023. 12. 21.	
13	2019. 10. 07.		30	2024. 10. 10.	
14	2020. 02. 24.		31	2025. 01. 24.	
15	2020. 02. 28.		32	2025. 03. 12.	
16	2020. 05. 07.		33	2025. 05. 27.	
17	2020. 08. 25.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일반대학원 학사업무의 처리는 이 시행세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학칙과 이 시행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및 편입학

제3조 (지원 및 입학절차)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지원 및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관련전형 실시
3. 대학원위원회 사정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② 학·석사연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11.9.1.>

제5조 (입학전형 방법)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협동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9.1., 2020.2.24.>

② 삭제 <2011.9.1.>

③ 삭제 <2011.9.1.>

④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개정 2020.2.24.>

제6조 (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포함)로 한다.

② 삭제 <2011.9.1.>

③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가 불합격하였을 경우 석사학위과정 사정기준에 의거 제2지망 석사학위과정으로 합격시킬 수 있다.

제7조 (서류전형, 구술시험) ① 서류전형은 대학성적, 대학원성적(박사과정만 해당), 학업 및 연구계획서, 추천서에 대하여 평가하며, 각 학과에서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에 대하여 평가하며, 각 학과에서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9.1.>

④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항목별 배점은 각 학과에서 정한다.

⑤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의 성적은 심사위원의 평가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8조 (지원 구비서류) ①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사진 1매
5.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6. 추천서(소정양식) 1부
7.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박사과정) 1부
8.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박사과정) 1부
9. 현역군인은 소속부대장 취학 승인서 1부
10.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11. 국·공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취학허가서 1부 <개정 2014.3.4.>
12. 학력조회확인서 1부 (외국대학 학위이수자 해당)

② 대학원의 연구과정은 상기 1항의 서류 중 1,2,4,5,6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연·산 협동과정은 상기 해당 구비서류 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1. 소속 학·연·산 협동 기관장의 추천서 <개정 2019.10.7.>
2. 지망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서

제9조 (전형위원) ① 총괄전형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5.1.>

② 전형위원장은 각 학과 주임교수로 하며 전형위원은 2명 이상 3명 이내로 하고, 각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5.1.>

③ 전형위원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의 성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9.1.>

제10조 (성적사정) ①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전형 결과를 사정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② 삭제 <2011.9.1.>

제11조 (편입학전형) ① 편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전공분야 동일계열이어야 한다.

② 편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2. 지원자는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9.1.>

제12조 (신입생 등록) 입학전형에서 최종 합격판정을 받은 신입생 및 편입생은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

제 3 장 등록 및 수료

제13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① 정규등록은 본 시행세칙 제16조 수료의 요건을 충족하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②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에서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취득 전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개정 2017.9.1.>

제14조 (연구등록금) ① 연구등록자의 등록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3.4.>

②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3.4.>

④ 제2항에 따른 등록금은 이 세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3.4.>

제15조 (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4.3.4.>

1. 수업일수의 4주 이전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2. 군입대 또는 질병(4주 이상 입원가료 진단서 첨부)으로 휴학하는 경우

② 법령으로 정한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할 경우 세부절차 등은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3.4.>

제16조 (수료의 요건) 수료를 위하여는 학위과정별 학칙 제20조에 따른 수업연한 기간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이 세칙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20.2.24.>

제17조 (수료자의 학위논문 제출) ① 수료자는 정하여진 소정의 자격시험(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4.>

② 논문심사비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재심사를 받는 학기에 심사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공 및 지도교수

제18조 (전공) 대학원 과정의 학과별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연구계획서) 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공, 지도교수 및 연구과제가 결정된다. <개정 2011.5.1.>

② 주임교수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학생이 전공할 분야의 전공교수를 지도

교수로 위촉하되, 필요시 1명의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5.1., 2011.9.1., 2015.8.1.>

③ 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3년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5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4.3.4., 2022.5.3., 2023.5.15.>

제20조 (지도교수의 의무)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계획수립, 수강지도, 제반 연구발표 및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매 학기말에 연구지도학점을 부여한 연구지도보고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지도의무를 소홀이 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해당교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1., 2015.8.1.>

제20조의2 (논문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의 내실있는 논문지도를 위해 학과 내규에 의거, 개별학생의 연구지도 및 논문제출 승인 등을 담당할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8.27.]

제21조 (지도교수 및 전공변경) ① 지도교수 또는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또는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한 후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 유고등으로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1., 2014.3.4., 2022.1.26., 2023.05.15.>

②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전공이 변경된 경우,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단,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3.4., 2018.09.21., 2018.11.28.>

제22조 (전과) ① 전과는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1.26., 2022.3.24., 2022.12.16>

② 전과 후 2개 학기 이상 전과 학과에서 논문지도를 받은 후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2.1.26>

③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최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6>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변경<2020.8.25>]

제 5 장 이수학점

제23조 (교과학점) ①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개설과목 취득학점 포함) 이상, 박사학위과정 60학점(석사학위과정 포함)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8.27.>

③ 일반대학원생은 항공·경영대학원의 교과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3.8.27.>

④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기이수한 ‘논문연구’ 과목은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7.>

⑤ 석·박사통합과정생이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10.7.>

제24조 (학점인정) ① 입학 전 국내외 타대학원(여기서 타 대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내의 각 대학원과 본 대학교 외의 각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한 학위과정의 동일계열로 입학한 경우 또는 동일분야과목을 취득한 경우는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② 재학기간 중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본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동일계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 비동일계열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12학점(인문사회계열 및 항공운항관리학과는 15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24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본교 일반대학원 동일계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에 한하여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3.1.>

④ 전항의 학점인정은 초과학점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제1항 및 제3항의 학점인정은 입학 후 4차 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의 학점인정은 해당 사항 발생 후 1개 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 2014.7.11.>

⑤ 전 3항의 동일계열 인정여부 및 인정학점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7., 2018.5.28., 2019.10.7.>

제25조 (학 · 군제휴) ① 군위탁생은 군내 교육기관 및 군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학 · 군제휴 협약에 의한 군 위탁생에게 학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위탁생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 · 군제휴 협약서에 따르며,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제26조 (연구지도학점) ① 연구지도학점은 지도교수 배정을 받은 때부터 지도교수에 의하여 매 학기 2학점씩 부여된다.

② 학생은 매 학기말에 연구내용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연구내용을 평가하여 매 학기말에 연구지도학점을 부여한 연구지도보고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1.5.1.>

③ 연구지도학점은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하며 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9.1.>

④ 연구지도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6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6학점을 취득하여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은 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며 편입학의 경우 취득학점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2020.2.24.,2025.1.24>

⑤ 연구지도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선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에 대하여는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대학에 설강된 특정과목(이하 선수과목 이라 한다)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선수과목은 입학과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규학기 중에 선수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 2018.9.21.>

③ 학생에게 과하는 선수과목은 1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삭제 <2018.09.21.>

⑤ 선수과목 이수는 C 이상으로 한다.

⑥ 선수과목은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성적을 부여하며,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 및 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3학점은 총 이수학점 및 평점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18.9.21.>

제28조 (이수학점 미달) 각 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1학점 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4., 2020.2.24.>

제 6 장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제29조 (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학과 단위로 편성하되, 교과목이 전공과정별로 분리된 학과에서는 전공과정단위로 편성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교과목 편성) 매 2년마다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학점수) 모든 과목은 한 과목당 1학기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

제32조 (교과과정 변경) 설정한 교과과정은 2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2년 미만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교과목이 전공과정별로 분리된 학과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이 전공과정별로 분리된 학과에서는 학과공통교과목과 전공과정별 교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34조 (교과목 개설) 학과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그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학과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매 학기 개강 1개월 전에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1.5.1., 2013.8.27.>

제35조 (학점취득 제한) 수업일수(학기 당 15주 이상)의 3분의 1이상 결석하는 자는 해당과목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유고결석, 직업상의 사유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예비군 동원 훈련 참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10.7.,2023.11.10., 2023.12.21>

제35조의 1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① 소속 주임교수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

제36조 (수강생의 수) 수강생이 5인 미만인 과목은 자동적으로 폐강된다. 단, 학과의 정규등록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설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8.9.21.>

제37조 (강의 담당자의 자격)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

②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외 인사

③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개정 2011.5.1.>

제38조 (강의 담당 과목수) 대학원과정 강의는 한 학기 당 1과목(또는 3학점)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과목 이상을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1.>

제39조 삭제 <2018.11.28.>

제 7 장 영어시험

제40조 (자격) 본 대학원에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한 자는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4>

제41조 (응시절차) ① 영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 및 응시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 2011.9.1., 2014.3.4.>

② 삭제 <2013.8.27.>

제42조 (시기) 영어시험은 매학기 실시한다. <개정 2013.8.27., 2014.3.4.>

제43조 (출제위원) 대학원장은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의뢰한다. <개정 2011.5.1.>

제44조 (출제원칙) 출제위원은 영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 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4.>

제45조 (배점 및 합격기준) 배점 및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19.10.7.>

제47조 (재시험) ① 영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4.3.4.>

② 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

제48조 (시험면제 및 대체) ① 영어공인시험 점수를 별표 2의 합격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학

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5.1., 2011.9.1., 2014.3.4.>

②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원할 경우 석사학위과정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4.>

③ 제1항의 공인시험 이외의 공인된 영어능력시험에서 TOEFL 대비 합격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1.>

④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3.8.27., 2014.3.4.>

⑤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 제출하거나,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한국어 강좌를 이수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8.27., 2014.3.4., 2022.1.26.>

⑥ 대학원에서 개설하거나 지정한 영어강좌를 이수한 학생에게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제 8 장 종합시험

제49조 (자격)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에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과정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교과학점 15학점(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12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개설과목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24.>
2. 박사학위과정
   교과학점 48학점(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포함)이상을 취득하여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3. 석·박사통합과정
   교과학점 4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중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원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중간자격시험 합격을 종합시험 합격으로 대체할 수 있고, 중간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제1항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0조 (시행 및 대체) 종합시험은 학과내규에 의거 실시하며, 구술시험이나 교과목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

제51조 (종합시험 결과제출) ① 학과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 답안지를 비롯한 제반 평가자료는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시험 시행 이후 3년까지 각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

제52조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 과목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1.9.1.>

② 삭제 <2011.9.1.>

③ 삭제 <2011.9.1.>

제53조 (출제 및 채점) 출제 및 채점위원 선정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1.5.1., 2011.9.1.>

제54조 (배점 및 합격)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과목당 60분)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55조 삭제 <2011.9.1.>

제 9 장 중간자격시험

제56조 (응시자격) 중간자격시험은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교과학점 15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제57조 (시행 및 대체) 중간자격시험은 학과내규에 의거 실시하며, 구술시험이나 교과목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

제58조 (결과제출) ① 학과 주임교수는 시험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간자격시험 답안지를 비롯한 제반 평가자료는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시험 시행 이후 3년까지 각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

제59조 (시험과목) ① 중간자격시험 과목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1.9.1.>

② 삭제 <2011.9.1.>

제60조 (출제 및 채점) 출제 및 채점위원 선정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1.5.1., 2011.9.1.>

제61조 (배점 및 합격) 중간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과목당 60분)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62조 삭제 <2011.9.1.>

제 10 장 학위청구논문

제63조 (예비발표) ① 예비발표는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이 속한 학기의 직전학기까지 행하여야 하며, 박사 학위 예비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자격시험(영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제26조제4항의 연구지도학점(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5.1.24.>
3. 각 학과에서 설정한 연구실적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6.12.1., 2018.9.21.>

② 예비발표는 주임교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소정양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행정

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

③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주임교수가 해당 전공분야 교원 혹은 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정하여 위촉하되, 교내 심사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10.7.>

④ 예비발표의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가하다고 판정할 때 예비발표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64조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가. 석사학위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3개 학기 이상), 학·석사연계과정 3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개정 2020.2.24.>
   나. 교과학점을 24학점(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다. 제26조제4항의 연구지도학점(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0.2.24.>
   라. 영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3.4., 2018.9.21.>
   마. 각 학과에서 설정한 연구실적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8.9.21.>
   바.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에 합격한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2. 박사학위청구논문
   가.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8개 학기 이상(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6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학기를 종료한 자 <개정 2016.12.1.>
   나. 교과학점을 60학점(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다. 제26조제4항의 연구지도학점(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6.12.1.,2025.1.24>
   라. 영어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3.4., 2018.9.21.>
   마. 각 학과에서 설정한 연구실적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8.09.21.>
   바.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에 합격한 후 다음 학기를 등록한 자 <개정 2016.12.1.>

제65조 (심사용 논문제출) ① 학생은 논문심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용 논문은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심사료는 대학원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

④ 심사용 논문은 지정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심사위원)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각 학과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25.3.12.>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은 3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9.10.7.>

③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 교원 혹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박사학위 심사

위원은 4인 이상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7.>

④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교내 심사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1인 이상 외부인사로 해야 하며,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7.>

⑤ 심사위원 중 위원장(주심) 1인을 둔다.

⑥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67조 (논문심사)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 위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위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공개발표 심사로 한다.

③ 서류심사는 제출된 논문을 검토하여 주제, 도입, 전개, 결과 등 논문의 내용과 논문체제 및 논문의 성과 등을 심사한다.

④ 공개발표 심사는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을 포함한 참관자들 앞에서 공개발표하고 질의 응답으로 논문의 내용, 체제, 성과 등을 심사한다.

⑤ 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초심, 중심,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반드시 1회 이상 공개발표로 실시하며, 종심 전 까지의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종심을 실시한다. <개정 2018.11.28.>

⑦ 논문에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충분한 시간이 요한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되는 경우는 1개 학기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심할 수 있다.

제68조 (심사판정) ① 서류심사와 공개발표 심사가 끝난 다음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1.5.1.>

② 논문심사 평가는 A, B, C, D로 하며,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평가가 C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69조 (논문 재심사) ①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의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심 사용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세칙 제72조 제4항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논문을 재심사한다. <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논문 재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필요시 공개발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논문의 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70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의 작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3.1.>

제71조 (논문체제) 삭제 <2016.3.1.>

제72조 (학위 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학위논문(지정부수)과 저작권 이용동의서를 도서관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1.5.1., 2016.3.1., 2019.10.7.>

②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학위수여를 보류하며,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된다. 단, 1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논문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처(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을 업로드한 후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서"를 출력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

④ 학위논문에 논문심사위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장의 의견서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21.9.30.>

제73조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1 장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제74조 (설치 및 구성) ① 일반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각 학과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5.1.>

제75조 삭제 <2013.8.27.>

제7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제77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12 장 학위수여

제78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취득 자격을 가진다.

1. 석사학위
   가. 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교과학점과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6.12.1.>
   나. 석사학위 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단 복수학위제 및 공동학위제 학생은 상대교 등록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2.24.>
   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서 합격 판정된 자 또는 계약학과,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학과내규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는 교과학점 등을 취득한 자 <개정 2020.8.25., 2022.5.3., 2023.11.10>
2. 박사학위
   가. 박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교과학점과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6.12.1.>

나.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이상(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6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단 복수학위제 및 공동학위제 학생은 상대교 등록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1.>

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종심을 거쳐 합격 판정된 자

제79조 (학위수여 의결) 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0조 (학위수여 의결보고) 대학원위원회가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한 후에는 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

제81조 (학위수여) 학위수여는 본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학위 종별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제82조 (학위수여 시기) 정규 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83조 (학위취소) ① 총장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 될 수 있다. <개정 2015.8.1.>

제84조 (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학문과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항공산업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다음 절차에 따라 총장이 수여한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3.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결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여의결을 확정한다. <개정 2011.5.1.>
4.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13 장 학과운영내규

제85조 (학과운영내규)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안에서 학과별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제 14 장 계절수업 <신설 2020.2.24.>

제86조 (계절수업) ① 계절수업의 개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수업의 개설과목은 전공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연구과목, 프로젝트 과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과목당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2.24.]

제87조 (학점) 계절수업의 학점 당 강의시간 등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현장연구 및 프로젝트 과목의 강의시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24.]

제88조 (수강신청 및 등록) ①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4.]

제 15 장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신설 2020.8.25.>

제89조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과정)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의 교과학점, 이수학점, 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학위수여자격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8.25.]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학칙시행세칙의 폐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세칙 이전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합격한 영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예비발표 등 각종 자격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제 22조 1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전 종합시험 및 중간자격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은 학과에서 종합시험 및 중간자격시험을 과목별로 시행하는 경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종합시험 및 중간자격시험을 과목별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개정 시행세칙 제41조에 의한 외국어시험 응시료 징수는 2012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재응시료만 징수한다.

④ (경과조치) 개정 시행세칙 제26조 3항에 의한 연구지도학점 성적 분류는 2012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23조 제2항 및 제27조 제6항에 의한 선수과목의 대학원 교과학점 미인정은 2013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24조 제3항에 의한 박사학위 입학자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은 2013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4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면제는 2013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19조 3항에 의한 지도교수 선정은 2014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21조 2항에 의한 예비발표 재실시 대상에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지도교수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 및 시행세칙 변경 이전에 예비발표를 통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제63조 1항 1호의 예비발표 자격조건은 2013년 8월 이전 수료자는 미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제16조, 제26조 4항, 제64조 2호, 제78조 2호에 의한 통합과정 수

업연한 단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13조 2항의 연구등록은 2018년 2월 수료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수료자에 대해서는 종전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27조에 의한 선수과목의 대학원 교과학점 인정은 2019학년도 1학기 이수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중 제39조 연구지도비는 2019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에 따라 융합학과로 전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위과정, 이수학기 및 계열과 관계없이 추가로 전과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22조 2항 개정 전에 융합학과로 입학 또는 전과한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22조 1항 개정에 따른 전과 횟수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19조 3항에 의한 지도교수 선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 시행 세칙중 항공경영학과 신설에 따른 제18조[별표 1]의 항공운항관리학과 변경 영문명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8.27., 2019.10.7., 2020.2.24., 2020.5.7., 2021.2.25., 2021.8.23., 2021.9.30., 2022.10.18., 2023.5.15., 2023.9.25., 2024.10.10., 2025.1.24.>

학위과정별 학과 전공표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열 및 유체공학, 구조 및 재료공학, 생산 및 시스템공학, 제어 및 동역학	열 및 유체공학, 구조 및 재료공학, 생산 및 시스템공학, 제어 및 동역학
항공전자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and Information Engineering)	항공전자및제어시스템, 통신시스템및멀티미디어, 마이크로파및집적회로, 컴퓨터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 반도체및디스플레이	항공전자및제어시스템, 통신시스템및멀티미디어, 마이크로파및집적회로, 컴퓨터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 반도체및디스플레이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시스템,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항공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항공소프트웨어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금속/경량신소재, 전자/반도체소재, 광기능/디스플레이소재, 환경에너지소재	금속/경량신소재, 전자/반도체소재, 광기능/디스플레이소재, 환경에너지소재
스마트항공모빌리티학과 (Department of Smart Air Mobility)	무인기유도제어, 무인기구조설계 무인기동력추진시스템, 무인기운용, 무인기소재부품	무인기유도제어, 무인기구조설계 무인기동력추진시스템, 무인기운용, 무인기소재부품
인공지능학과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모델링, AI 시스템설계, AI 응용	-
반도체학과 (Department of Semiconductors)	소자, 공정, 회로, 재료	소자, 공정, 회로, 재료
항공운항관리학과 (Department of Air Operations Management))	항공운항관리	항공운항관리, 항공우주법
항공교통물류학과 (Department of Air Transport, Transportation & Logistics)	항공교통, 교통, 물류	항공교통, 교통, 물류
미래항공교통학과 (Department of Advanced Air Transportation)	미래항공모빌리티	미래항공모빌리티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인사/조직관리, 경영과학, 경영전략, 국제경영학, 회계학, 생산관리, 항공경영, 경영정보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인사/조직관리, 경영과학, 경영전략, 국제경영학, 회계학, 생산관리, 항공경영, 경영정보관리
영어학과 (Department of English)	항공영어, 영어통·번역,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항공영어, 영어통·번역,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항공우주법학과 (Department of Air & Space Law)	항공우주법, 항공우주정책, 사법, 공법	-
서비스경영학과 (Department of Service Management)	항공서비스, 서비스경영	항공서비스, 서비스경영
항공경영학과 (Department of Aviation Management)	항공경영	항공경영
항공정책전공 (Aviation Policy)	항공정책	-

[별표 1-1] <개정 2019.10.7., 2022.10.18., 2024.10.10., 2025.5.27.>

계약학과 학위과정별 전공표

구 분	과 정	학 과	전 공
일반 대학원	삭제		
	석사	융합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Convergence Engineering)	융합기계공학
		위성시스템 및 정보활용학과 (Department of Satellite System and Intelligent Applications)	위성시스템공학, 위성탑재체공학, 영상정보활용

[별표 2] <개정 2016. 12. 1>

영어시험 합격기준 점수표

구 분	시 험 종 류		합격기준점수
일반대학원	TOEFL	IBT	61점
	TOEIC	정규TOEIC	700점
		교내모의TOEIC	
	TEPS		2급(601점)